



2023_{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CONTENTS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 **I**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개요

- **II** 2021~2022년도 행정제도 개선 사항

- **III** 2023년도 행정제도 개선(안)

- **IV** 2024년 제도개선 추진 일정(안)



I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개요

I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요

1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 ✓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선도적 연구 환경을 조성
-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향상

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운영 근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및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법 제28조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법 제29조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 및 일정 등 관련 절차 명시

현장중심
제도개선
추진 일정
(연례)



3월

제도개선
기본지침 수립
(과기자문회의)

4월 ~ 5월

연구현장
의견 접수
(온라인, 간담회)

6월

제도개선
과제 선정
(전문가 등)

7월 ~ 8월

제도개선안
마련
(과기자문회의)



II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2021~2022년도 행정제도 개선 사항

II-1 2021년 제도개선 사항 : 현장애로 해소

자율과 재량을 확대

연구노트



서면(전자)



기관 자율

인건비 집행 방식

타교생



인건비

As-is



인건비



학생인건비

To-be

제도개선 사항

과제 종료 이후 저작물(논문 등)
출판 비용 지원 강화

논문게재료 등 저작물 관련 비용은 과제 종료 후 2년까지 직접비 집행 허용
(간접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연구비 선집행 제도의 현장 안착 촉진

연구비 선집행 제도 활용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자와 연구지원부서의 역할, 운영절차, 관련 사례 등)

특허 등 지재권의 포기절차 명확화

연구기관의 지재권 포기 절차 명확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II-1 2021년 제도개선 사항 : 연구자권익보호

제도개선 사항



신진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여건 개선

연구 준비 중이거나 다음 과제 준비 중인 박사 후 연구자는 간접비에서도 인건비 계상 허용



연구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간접비에 계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쟁형 R&D 활성화 세부근거 마련

경쟁에 따라 과제를 조기 중단할 수 있는 세부 근거 마련

국제 R&D 활성화

출연(원)만 인정하던 국제공동연구비 계상을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허용 (부처승인 전제)

국가핵심기술 보안관리 체계화

보안과제 분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이 보안과제 분류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기준 강화, 일반과제는 완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비용 집행 근거 마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비용 등 활용비를 직접비/간접비에 신설

II-2 2022년 제도개선 사항 : 범부처 협력 기반 혁신법 취지 정착

(1) 범부처 규정 검토 및 정비 권고

현장의 목소리



“일부 부처에서 여전히 혁신법과 다르게 정하는 규정들이 있어 혼란 계속”

대응 및 개선사항



부처·전문기관별 자체규정에 대한 혁신법 정합성 일괄 검토 추진 (22.1월~)



혁신법에 따른 정비가 미비한 부처, 전문기관 규정에 대해 사항별* 개선 의견 제시

* 혁신법과 다른 용어 사용, 혁신법 개선사항 미반영, 공통사항 별도 운영 등

☑ 출연연 기본사업 규정에 대해 혁신법 반영 명확화, 별도 운영 인정사항의 규정 명확화 의견 제시

☑ 인문사회, 국방 분야 등 혁신법 일부 적용 제외 사업은 공통적용 사항인 제재규정에 대한 정비 의견 제시

(2) 연구수당 계상 유연성 강화

현장의 목소리



“연구수행여건 변화에도 최초 협약 시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만 인정되어 불편”

개선사항



연구수당의 단계별 조정 허용

☑ 인건비 증액, 참여연구자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단계 시작 시점에 연구수당 계상액 조정 가능

기존

최초 협약 이후 연구수당 증액불가



제도 개선

전체 연구기간 내 매 단계 시작마다 연구수당 증액 가능

II-2 2022년 제도개선 사항 : 범부처 협력 기반 혁신법 취지 정착

(3) 중앙행정기관 직접 수행사업 3책5공 적용 완화

(4) 출연연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자율성 확대

현장의 목소리



“중앙행정기관(국립연)에서 수행하는 R&D사업은 조직 구성과 과제가 직결되나, 3책5공으로 기관 운영 자율성 저해 우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개선사항



중앙행정기관 직접 수행사업에 3책5공 적용 제외

☑ 3책5공 적용 제외 중인 출연연 기본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사업간 형평성 제고

기존

기관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 중, 출연(연) 기본사업만 3책 5공 제외

제도 개선

출연(연) 기본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직접 수행사업 연구과제 3책 5공 제외

현장의 목소리



“출연연 해외 분원 운영 시 연구비에서 파견 비용을 사용할 수 없어 운영에 애로”

개선사항



출연연 기본사업은 기관 공통비용 세부 용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자율성 부여



출장비 사용용도에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 파견 비용 명시

기관 공통비용

기존

주요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모호

제도 개선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공통비용 사용

기본사업 관련 파견비용

기존

사용용도 부재

제도 개선

기본사업 관련 해외 파견 비용 인정

II-2 2022년 제도개선 사항 : 선도적 연구개발 기반 강화

(1)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현장의 목소리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 장려 비용의 사용 근거가 불명확하여 해외 연구자 유치에 애로”

개선사항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연구비 사용 항목 신설

- ☑ 연구활동비에 해외 연구자 유치 장려금,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항목 신설

연구
활동비

기존

해당 없음

제도
개선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항목 마련

(2) 수요자 참여 R&D 연구비 사용 편의 제고

현장의 목소리



“사회문제해결 등 수요자 참여 과제 수행 시, 기획·평가에 참여한 일반국민에 연구비 지급 근거 부재”

개선사항



‘연구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에 비전문가 수요자에 대한 비용 지급 근거 명시

예: 사회문제 해결형 R&D 참여 일반국민

수요자 참여에 대한 비용 계상

기존

매뉴얼로 안내

- 법령 해석을 통해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 중이나, 현장에서 실질적 활용에 애로

제도
개선

시행령에 사용용도를 명시

II-2 2022년 제도개선 사항 : 선도적 연구개발 기반 강화

(3)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현장의 목소리



“아직 성장중인 초기 중견기업도 타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기관부담금을 부담하여 국가R&D 참여에 애로”

개선사항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비율 확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기존

정부가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지원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부담 완화 정책* 에도, 국가R&D 참여 시 일률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부담 (총 연구개발비의 30%)

제도 개선

일정 매출액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은 정부가 75%이하 지원

(4) 보안책임자 지정 명시 등 연구보안 강화

현장의 목소리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유출 우려 확산 등에 따라 국가R&D 연구보안 체계적 관리 필요”

개선사항

☑ 시행령에서 중앙행정기관 보안대책에 연구기관이 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

- 연구개발기관 보안대책에서 보안책임자 지정, 보안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교육 의무

기존

연구기관 보안대책
관련 시행령
규정 없음

중앙행정기관보안대책
관련 시행령
규정 없음

제도 개선

보안대책에 포함하도록 명시 (시행령)

보안대책에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도록 명시 (시행령)

II-2 2022년 제도개선 사항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현장의 목소리



“최저임금 상향, 물가상승 등에도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은 상승없이 머물러 있음”

개선사항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추진

학사

월100만원
↓
월130만원
(30만원 ▲)

석사

월180만원
↓
월220만원
(40만원 ▲)

박사

월250만원
↓
월300만원
(50만원 ▲)

학생인건비 기준

기존

'08년 이후 계상기준 유지

제도
개선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추진

(2)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현장의 목소리



“종이없는 연구 환경 조성 노력에도 일부 연구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 관행 유지”

개선사항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전자화 문서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보관 의무 면제 추진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문서를 정산·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원 및 각 부처 감사부서와 협의 추진

증명자료의 보관 의무

기존

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종료 후 의무적으로 5년간 보관

제도
개선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전자화 문서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 면제

II-2 2022년 제도개선 사항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3) 이해충돌 윤리가이드라인 마련

현장의 목소리

“국공립대, 출연연 등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 중이나,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연구현장 혼란”

개선사항

공공·민간 모두 활용가능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를 연구윤리 가이드에 반영('22.5월)*

* (주요내용) 이해충돌 유형,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자·연구기관의 책무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령 해설 포함

연구윤리가이드라인

기존

이해충돌 예방·관리 내용 부재



제도
개선

연구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이해충돌 예방·관리에 관한 안내+법령 해설 제시

(4) 지식재산권 포기 대상에서 출원 특허 제외

현장의 목소리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한 다양한 지식재산 출원 전략 구사(취하-재출원 등)를 위해 특허 출원은 지재권 포기 승인 대상에서 제외 필요”

개선사항

지식재산권 포기 대상에서 출원 특허를 제외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다양한 지식재산 출원전략을 지원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대상

기존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필요



제도
개선

등록한 지식재산권



III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24년 2월~ 시행)

1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23.3월)

- ☑ '23년도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현장의견 수렴 (총 10회 이상)

※ 주체별 : 대기업(2.1), 중견·중소기업(2.14), 대학(2.17), 출연연('22.12.1)

주제별 : 사회문제해결형R&D(2.1), 국제협력R&D(2.14), 연구보안('22.11.11)

권역별 : 수도권·강원권('22.12.6), 충청권('22.12.8), 호남권('22.12.13), 영남권('22.12.16)

- ☑ 제도개선 쉼 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23.1월)

2 현장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23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통보('23.3월)

3 연구현장·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의견 접수 및 제도개선위원회 검토 ('23.4월~6월)

- ☑ IRIS(온라인) 및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제도 관련성, 명료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

※ IRIS(온라인) 의견 접수 방법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iris.go.kr> 접속
→ 알림 고객 → 'R&D 제도개선 제안' 클릭



개요



- ☑ 운영배경: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매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제도 개선 추진
- ☑ 구성: 연구 경험 및 국가연구개발제도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 대학, 출연(연) 및 법률전문가 등 총15인 내외
※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제도개선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안

2023년 「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 R&D정책 및 제도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개선안을 제안**하는 Bottom-up 방식 의견 수렴



운영기간

1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운영



결과활용

'23년 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3월) 및 '23년도 제도개선안 마련(8월) 등 체계적 제도개선 추진

1단계

- 위원별 제도개선의견 제안 ('23.1월)
- 제도개선 기본지침 검토('23.3월)



2단계

- 제도개선 기본방향 수립 이후 온라인으로 접수된 연구현장 의견('23.4~5월) 검토 및 시의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사항 선정 및 분류('23.6~7월)
- '23년도 제도개선(안) 검토 및 마련('23. 8월)

추진 목표 : 혁신·도전의 선도형 R&D시스템으로 전환

1.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

- 1) 부처별 규정 정비 지속 및 현장교육 확산
- 2) 종이없는 연구환경을 위한 증명자료 보관면제 명확화
- 3) 학생인건비 제도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4) 간접비 관리체계 개선

2.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제도 마련
- 2) 국제공동연구 수행 영리기관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
- 3) 국제공동연구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기준 완화

3.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

- 1) 국외 수혜정보 관리체계 구축
- 2)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
- 3) 연구보안 현장 가이드라인 및 해외사례집 마련

4.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 1) 연구개발기관의 파견비 사용 인정범위 확대
- 2)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 제도 폐지
- 3) 환경변화에 대응한 특별평가 활용 지원
- 4) 연구성과 부분공개 제도 신설

Ⅲ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1)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1) 혁신법 정착을 위한 부처별 규정 정비 지속 및 현장교육 확산

현장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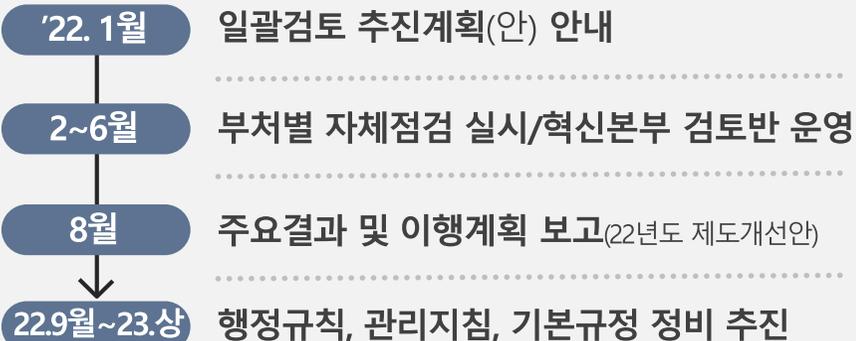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통 규범으로 혁신법이 시행중임에도 일부 부처·전문기관 등에서 혁신법과 달리 운영하는 사항들에 대해 개선 필요”

대응 및 추진현황



부처 행정규칙·전문기관 관리지침, 출연연 기본사업 규정에 대한 **일괄 검토 추진**
(’23.9월~23.상)



주요결과 및 향후계획



대다수 부처·기관에서 규정 정비를 이행하였으나 일부 부처·기관에서 지연 및 이견 발생

- ✓ (정비 지속) 자체규정 정비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인 부처·기관들에 대해 이행현황 지속 관리 및 독려
- ✓ (이견사항) 연구비 사용기준 등 일부 세부규정과 정합성 확보에 이견있는 부처·기관은 개선 권고 및 협의 지속
 - 사업 및 수행주체 특성 등에 따라 자체규정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혁신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

정규교육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대상 혁신법 및 국가R&D제도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 운영

현장설명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설명회 실시

Ⅲ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1)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2) 종이없는 연구환경을 위한 증명자료 보관 면제 명확화

현장의 목소리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증명자료의 보관 면제 규정이 재량으로 되어 있어 심리적 부담 존재”

현황 및 문제점

- ✓ 정산과정에서 전자문서의 출력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But, 스캔본 등에 대한 출력 요구 금지 규정은 부존재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자료는 연구기관 재량에 따라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 ✓ 국가 R&D 감사에서 증명자료 보관 및 출력 요구 금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도개선

- ✓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증명자료의 보관 의무 면제, 출력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및 상향입법 추진
 - 국가 R&D 관련 감사 업무도 증명자료에 대해 동일 규정 적용

	기존	개선
증명자료 보관 면제 규정	시스템 등록 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시스템 등록 시 보관한 것으로 간주
출력 요구 금지 대상 자료	전자문서 전자화 문서	전자문서, 전자화 문서 시스템 등록 자료
증명자료 보관 면제 대상사무	정산	정산, 감사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1)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3) 학생인건비제도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현장의 목소리



- “학생인건비 실지급 향상 지속 요구”
-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이자 및 잔액 명확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활동비 사용을 위해 학생연구자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상황 발생

* 현재 계상기준의 평균 44% 지급률 지급(상향 전 기준의 53%) 10% 이하 지급 8.9%

- ✓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이자, 잔액 등 확인에 애로

제도개선

- ✓ 계상률 단위 설정, 학생인건비 이관 효율화, 학생인건비 계좌 분리 통해 제도 내실화 및 효율성 강화

* 현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65개 기관 중 45개 기관이 이미 계좌분리 시행

	기존	개선
계상률 단위 설정	계상률 1% ~ 100% 자율 협약	최저 계상률(지급률)을 10% 이상으로 개선 (극소액 지급 형태 방지)
학생인건비 이관 효율화	고시 산식에 따른 이관 외 이관 불가	휴면계정 기관 내 이관 허용
학생인건비 계좌분리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계좌로 시스템에 의한 학생인건비 관리	전용 계좌 분리로 이자 및 잔액의 투명성 확보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1)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4) 간접비 관리체계 개선

현장의 목소리



- “간접비가 연구지원에 사용되지 않고, 잉여재원이 과다하다는 지적 존재(국회)”
- “간접비 고시비율에 비해 낮은 간접비를 지급 하도록 하는 예외 과제가 많아 연구지원에 애로”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지원에 사용되는 간접비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와 관련이 적은 비용이 간접비 비율에 포함될 우려
- ✓ 기관별 간접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과제* 다수, 연구지원을 위한 충분한 간접비 확보가 어려움
 - 협약 당시의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공지 없이 협약 과정에서 고시비율보다 낮게 조정하는 과제 존재

제도개선

- ✓ 실소요 간접비를 정교하게 산출하기 위한 새로운 분류기준* 마련 및 낮은 비율 적용 시 사전공지 의무화

* 예시) 대학 행정실 인력 인건비 인정 금액 = 행정실 전체 인건비 × $\frac{\text{연구수익}}{\text{연구수익} + \text{교육수익}}$
 → (개선) 행정실 직원 개인별 인건비 ×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른 연구 활동 지원 비중



Ⅲ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2)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1)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제도 마련

현장의 목소리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위해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관련 과제관리 방법에 대한 종합적 안내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 해외기관이 법령상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에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어려움
- ✓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수행방법 등에 대해 연구현장에 구체적 안내 필요

제도개선

- ✓ 해외기관이 혁신법상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과제 수행·관리 위한 안내서 마련
 - 혁신법(시행령) 상 연구개발기관 정의(제2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기관을 추가(2426 시행)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2)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 국제공동연구 수행 영리기관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

현장의 목소리



“영리기관이 국제공동 R&D 국제공동연구비를 계상할 경우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연구비도 기관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부담 증가”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 R&D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은 매칭 비율*에 따라 전체 연구비 중 일부를 의무 부담, 그 중 일부는 현금 부담

* 기관부담 연구비 비율 : 총 연구비의 25%(중소), 30%(중견), 50%(대기업) 이상

* 현금비율 : 기관부담 연구비의 10%(중소), 13%(중견), 15%(대기업) 이상

- ☑ 영리기관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매칭 비율에 따라 기관부담금 의무 발생

제도개선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비에 대해서만 매칭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개정

- 해외기관에 지급하는 국제공동연구비는 제외하고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2)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3) 국제공동연구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예외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



“국제협력 활성화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선진기술 유입 획득, 글로벌 인재 육성 등 국제공동연구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예외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5개(책임자 3개 포함)이며, 필요시 예외 규정에 따라 과제 수 적용에서 예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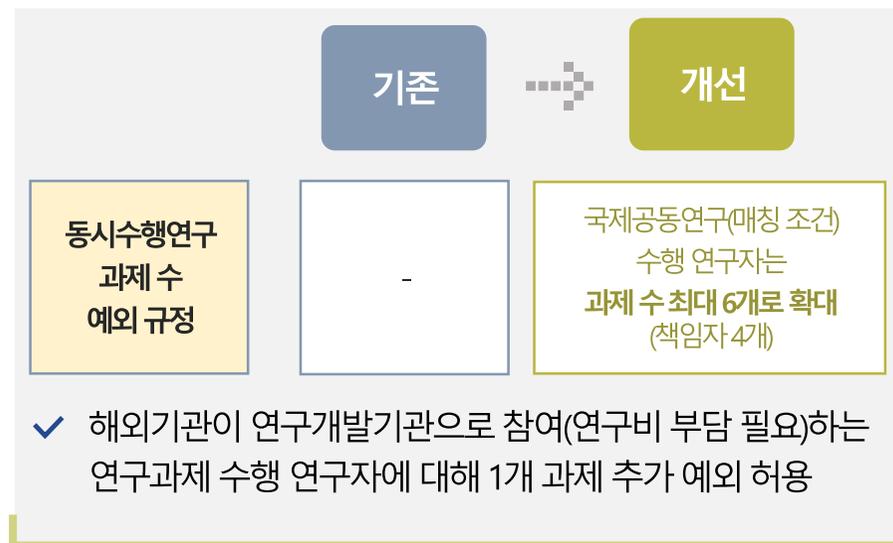
- * (예외)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 사전 조사 / 기획·평가 연구
- 시험·검사·분석 과제 / 과제조정 및 관리 목적의 과제 / 기반 구축
- 고등교육재정지원 /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 과제
-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과제
- 비영리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 수행하는 과제
- 과기자문회의 심의 완료 과제

제도개선

☑ 해외소재기관이 주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 연구자에 대한 동시수행 과제 수 일부 완화 추진

— 국제공동연구의 특성 및 업무부담, 연구수행 전념이라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1개 과제에 한하여 추가 예외를 허용

* 국제공동연구를 1개 이상 포함할 시, 동시수행 과제 수 최대 6개(그 중 책임자 4개)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3)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

(1) 국외 수혜정보 관리체계 구축

현장의 목소리



“해외 주요국은 국가 R&D 신청 시 연구자의 외부자금 수혜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우리의 경우 관련 제도가 부재함”

현황 및 문제점

- ✓ 주요국, 국가 R&D 신청 시 해외자금 수혜정보 신고 의무화 반면, 국내의 경우 관련 제도 부재 및 자체 관리체계 미흡

* 규정 보유 연구기관 비중은 대학 43.7%, 공공연 75.8%, 기업 83.3% 수준(23.6월 설문)

국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수혜현황 신고 정책 사례
	- 정부연구비 신청 시 물질적·비물질적 외국수혜 현황 신고 의무화
	- 국외 포함 타 연구자금 수혜현황 신고 의무화 및 관련 시스템 개편
	- 외국기관과의 관계 등 포함 개인적·영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 외국 인재프로그램, 외국연구지원 등 외국영향 관련 정보공개 강조

제도개선

- ✓ 국가 R&D 수행 시, 연구자의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국외 수혜정보 보고제도 도입·운영

< 국외수혜정보 신고제도 신설 >

- ✓ 작성대상 : 정부R&D 수행기간 동안 국외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의 대가를 받는 연구책임자
- ✓ 작성시기 : 정부R&D과제 협약 및 수행 중
* 1회만 입력하면 타과제 신청 시 기존자료 자동입력 및 수정가능
- ✓ 작성내용 : 과제명, 지원출처,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3)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

(2)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

현장의 목소리



- “보안과제 분류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분류가 어렵고, 보안과제 분류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전문기관)”
- “보안조치사항을 수행하는 근접지원인력에 대한 보안수당 미지급(출연연)”

현황 및 문제점

- ✓ **보안과제 분류 저조, 국가안보 위주로 보안과제 분류 부처가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제한적**
* 국가 R&D 과제 중 보안과제는 약 0.81%(국방부·방사청 555건, 기타 53건, '21년 기준)
- ✓ **보안과제 분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보안대책) 하였으나, 실제로는 분류위원회가 아닌 기획·선정 시 분류**
- ✓ **인센티브 부족으로 보안과제 관련 업무 기피**

제도개선

- ✓ **보안과제 분류 기준 추가로 연구자산 보호 강화, 보안수당 대상 확대 및 연구지원체계 평가 시 반영 강화**
 - 과제 기획·선정 시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에서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과제 수행 중 재분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분류가이드 제시)

	기존	개선
보안과제 관리	한정된 보안과제 분류기준, 공고 전 분류 위주	보안과제 분류기준 추가 보안등급 분류 절차 세분화유연화
인센티브	① 보안수당 대상: 연구자 ② 지원체계평가: 연구보안 관리비, 연구보안 교육, 연구보안 인력 관리	① 보안수당 대상: 연구자 및 근접 지원인력 ② 지원체계평가 시, 연구보안 관련 항목 반영 강화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3)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

(3) 연구보안 현장 가이드라인 및 해외사례집 마련

현장의 목소리



“연구기관이 연구보안 규정을 제정하거나 해외로부터 연구 제의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부재(출연연대학)”

현황 및 문제점

☑ 주요국 연구보안정책, 연구계·학계의 동향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연구보안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미흡

☑ 연구기관에 연구보안 관련 전담조직 또는 인력 부족 현장에서 참고할 구체적인 안내서 부재

* 구체적인 안내서가 없어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출입·사용 등 출연연 단위에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소속 연구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발생

제도개선

☑ 연구보안 관련 해외 사례집 및 국가 R&D 수행 단계별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연구보안 정책사례 및 연구기관의 규정 연구자산탈취 위험 사례 등 소개하는 해외사례집 마련·배포(236)
- 연구기관 및 연구자 대상 국가 R&D 수행 단계별 연구자산 보호 및 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가이드라인 방향) 참여연구원 관리, 성과물·기술 이전, 정보통신망 관리, 연구시설 관리, 실태점검 등에 대해 연구기관·연구자의 역할을 나누어 제시



Ⅲ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4)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1) 연구개발기관의 파견비 사용 인정범위 확대

현장의 목소리



- “개방과 융합시대에 걸맞게 출연연 기본사업 외에도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폭넓은 파견활동 비용 인정 필요”
-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도 인력지원비(간접비)로 지급가능하나 직접비에서는 사용 불가”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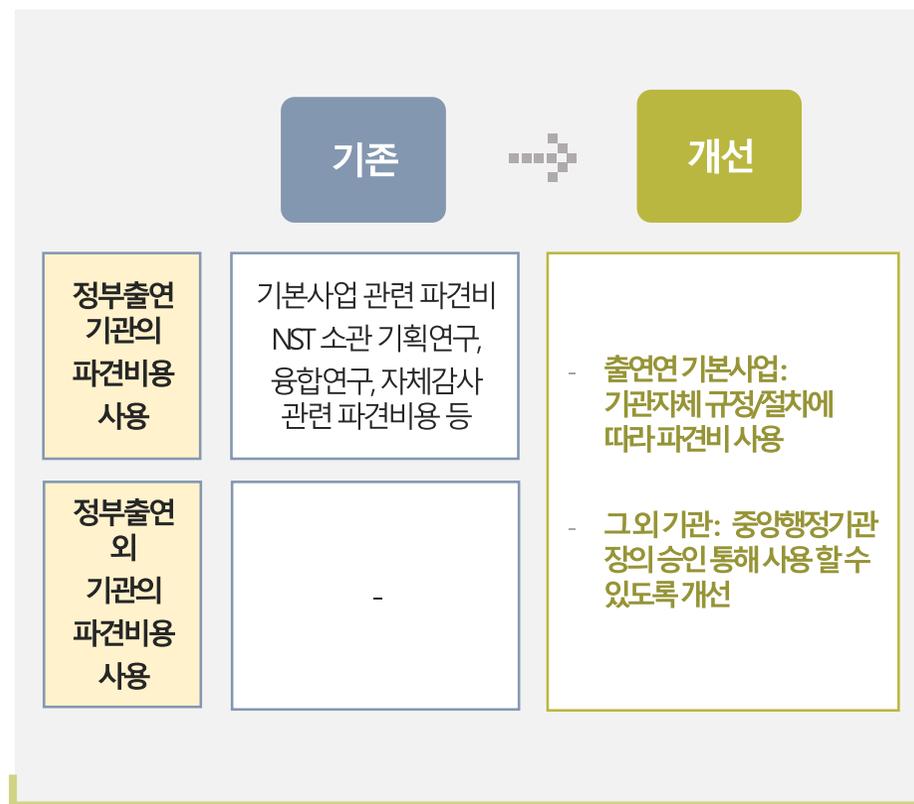
- ✓ 국가 R&D 과제에서의 파견 관련 비용 사용은 제한적 허용

* 기존에는 (직접비) 출연연 기본사업 NST 소관 융합연구를 위한 파견비 등과 (간접비)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출연연 소속 인력 파견비만 사용 가능

- ✓ 국제공동연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파견 등 과제의 주요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견비 사용에도 애로

제도개선

- ✓ 부처(전문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파견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4)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2)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 제도 폐지

현장의 목소리



“매년 수백 건의 포기특허가 발생하는데 개별 특허에 대한 포기 승인 신청제도로 인해 행정적 비용적 부담(출연연 TLO 및 대학 산단 등)”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포기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도록 규정
- 특허전략 운용이 중요한 상황에서, 특허포기 절차로 인해 시간 지연 및 비용부담 발생

< 최근 5년간 주요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 건수(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A 기관	290	260	312	448	377
B 기관	401	356	416	306	418
C 기관	143	180	235	193	126
D 기관	1,472	764	1,908	1,310	937

제도개선

-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의무를 폐지, 관련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개선
 -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이 운영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4)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3) 환경변화에 대응한 특별평가 활용 지원

현장의 목소리



- “유연한 과제 관리를 위해 도입된 특별평가가 그 취지와 달리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처분의 사전 절차로 주로 활용”
- “연구환경 변화, 연구목표 조기 달성 시에도 특별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연구수행 부담 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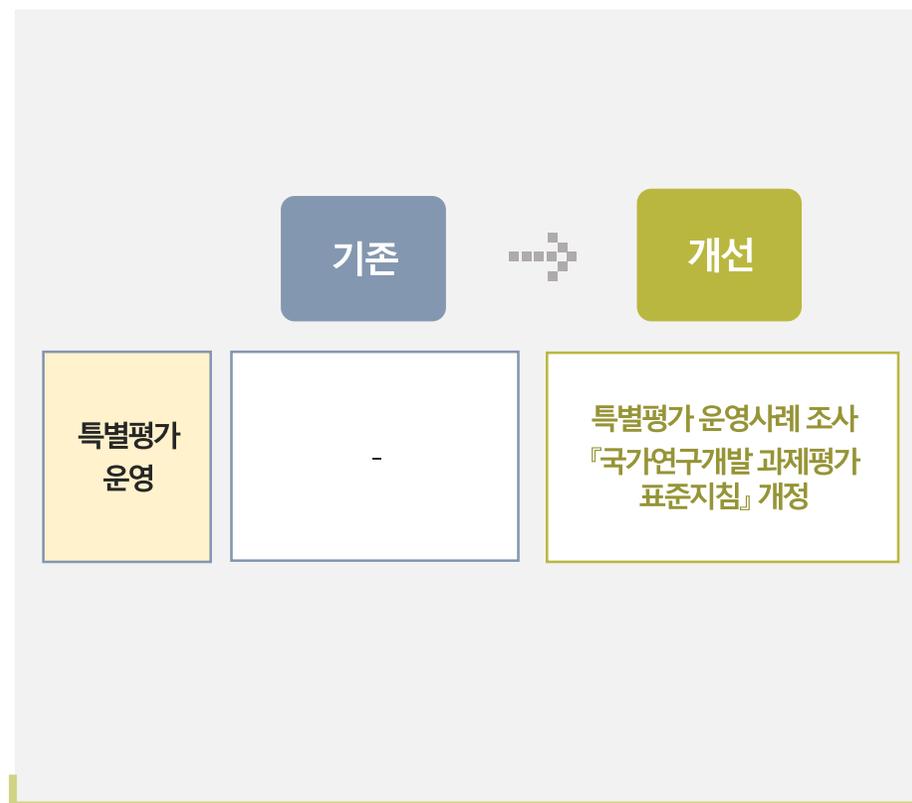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개발과제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과제를 중간에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평가 제도 운영(21년~)
- ✓ 연구환경 변경 등 특별평가 실시 사유를 혁신법*에서 규정 일부 부처·기관에서 특별평가 제도를 미운영하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처분의 사전절차 수준으로 활용

* (제15조 제1항) △ 연구개발 환경 변경 △ 연구목표 조기 달성 △ 연구자(기관) 신청 △ 협약의무 불이행 또는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제도개선

- ✓ 특별평가 운영 사례 조사,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용 유도



2023년 제도개선(안) : (전략4)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4) 연구성과 부분공개 제도 신설

현장의 목소리



“보안과제 등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서 및 성과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우수 연구성과 활용이 저조”

현황 및 문제점

- ☑ 국가연구개발성과는 공개가 원칙이며, 보안과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가능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연구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과제, 보안과제, 지식재산권 취득 예정, 외국과의 협정, 중소기업의 임치,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 가능

- ☑ 법적근거 부족으로 비공개 대상이 일부인 경우에도 전체를 비공개하여 성과 활용이 미흡

제도개선

- ☑ 국가연구개발성과 중 비공개가 필요한 부분 외에는 성과공개를 통해 활용을 촉진하도록 성과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 신설





IV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2024년 제도개선 추진일정(안)

IV 2024년 제도개선 추진일정(안)

'24.1분기 ▶

「'24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 확정



'24.4 ~ 5월 ▶

연구제도 개선 의견 제안·접수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현장 의견 접수(온라인/오프라인)



'24.5~7월 ▶

제도개선 주요방향 검토 및 우선순위 도출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 통해 개선과제 선정 및 개선방안 구체화



'24.8월 ▶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수립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감사합니다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 교육(안)

'24.2.

CONTENTS

I II III IV V VI

추진배경

추진경과

보고내용

질의응답

사례적용

문의처

I. 추진배경 : 기술패권 경쟁 속 연구자·연구자산이 위협에 노출

과학기술의 안보화

- ☑ 안보 개념이 '군사'에서 '경제'와 '기술'로 확장

연구자를 이용한 연구자산 탈취

- ☑ 연구자를 경제적으로 유인하여 국가 주요 연구자산 탈취

※ 미 찰스리버 교수 체포 ('20년), 카이스트 이○○교수 체포 ('20년) 등

해외의 연구간섭 위험

- ☑ 국제 공동연구 중 일부 해외기관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을 유도하거나 강제

위험 인지

국가 R&D 연구책임자(또는 수행 예정자) 등이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 필요



II. 추진경과

- '23.6.30. ● **해외 사례집 발간**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연구보안정책 동향 등 사례 소개
- '22.9~'23.10. ● **현장의견 수렴 15회**
대학 산단장·연구처장 ('22.9월, '23.8월), NST 출연연 연구관리부서장 ('22.9월, '23.7월), 전문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22.11·12월, '23.6·10월), 연구윤리 전문가 ('23.6월) 등
- '23.9.26. /과기자문회의 ●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마련**
국외 수혜정보 관리, 범부처 연구보안 규정 체계화, 보안등급 세분화, 보안과제 연구성과 활용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성 및 전문가 육성, 인식 제고 등
- '23.11.9~20. ● **국외수혜정보 보고가이드(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 '24.2.6. ● **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제9조 제3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III. 보고내용: 주요 내용

예시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IRIS 소개

사업정보

알림·고객

R&D 정보서비스

일반과제 연구책임자 ('24.2.15.~'27.2.14.)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보고 시기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금액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협약 시	A국 □□기업	~에 관한 연구	'22.4.1~'24.3.31.	총 5만불	해당과제 선행연구
	B국 ○○대학	연구인력 지원	'24.3.1~'25.2.28	박사급 2명 석사급 4명	해당과제 참여예정
수행 중	C국 △△연구소	~주제로 강연	'24.5.1	1000만원	해당과제 무관

III. 보고내용: 주요 내용

예시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IRIS 소개

사업정보

알림·고객

R&D 정보서비스

1

일반과제 연구책임자 ('24.2.15.~'27.2.14.)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보고 시기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금액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협약 시	A국 □□기업	~에 관한 연구	'22.4.1~'24.3.31.	총 5만불	해당과제 선행연구
	B국 ○○대학	연구인력 지원	'24.3.1~'25.2.28	박사급 2명 석사급 4명	해당과제 참여예정
수행 중	C국 △△연구소	~주제로 강연	'24.5.1	1000만원	해당과제 무관

1

보고 대상

국가 R&D과제 수행 중 또는 수행하려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III. 보고내용: 주요 내용

예시



IRIS 소개

사업정보

알림·고객

R&D 정보서비스

일반과제 연구책임자 ('24.2.15.~'27.2.14.)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2

보고 시기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금액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협약 시	A국 □□기업	~에 관한 연구	'22.4.1~'24.3.31.	총 5만불	해당과제 선행연구
	B국 ○○대학	연구인력 지원	'24.3.1~'25.2.28	박사급 2명 석사급 4명	해당과제 참여예정
수행 중	C국 △△연구소	~주제로 강연	'24.5.1	1000만원	해당과제 무관

2

보고 시기 모든 과제 국가 R&D 협약 시 모든 과제 과제 수행 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 1회 입력으로 국가연구자번호와 연계해 서버 저장, 추후 다른 과제 신청·수행 시 연구자가 수정 용이하도록 설계(IRIS)

III. 보고내용: 주요 내용

예시

3



IRIS 소개

사업정보

알림·고객

R&D 정보서비스

일반과제 연구책임자 ('24.2.15.~'27.2.14.)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보고 시기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금액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협약 시	A국 □□기업	~에 관한 연구	'22.4.1~'24.3.31.	총 5만불	해당과제 선행연구
	B국 ○○대학	연구인력 지원	'24.3.1~'25.2.28	박사급 2명 석사급 4명	해당과제 참여예정
수행 중	C국 △△연구소	~주제로 강연	'24.5.1	1000만원	해당과제 무관

3

보고 방법

(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외 수혜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과제 수행 중) IRIS 내 연구자정보 현행화



III. 보고내용: 주요 내용

예시

4

일반과제 연구책임자 ('24.2.15.~'27.2.14.)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보고 시기	 지원·지급 출처 <small>(외국 정부/기관/단체 등)</small>	 지원·지급 사유 <small>(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small>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금액 <small>(인력/시설/보수 등)</small>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협약 시	A국 □□기업	~에 관한 연구	'22.4.1~'24.3.31.	총 5만불	해당과제 선행연구
	B국 ○○대학	연구인력 지원	'24.3.1~'25.2.28	박사급 2명 석사급 4명	해당과제 참여예정
수행 중	C국 △△연구소	~주제로 강연	'24.5.1	1000만원	해당과제 무관

4

보고 사항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인력·장비·시설 등) 지원 및 노무 또는 자문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

※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며 단순 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 미포함



III. 보고내용: 주요 내용

예시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IRIS 소개

사업정보

알림·고객

R&D 정보서비스

일반과제 연구책임자 ('24.2.15.~'27.2.14.)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5

보고 시기	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	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	지원·지급 기간	지원·지급 금액 (인력/시설/보수 등)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협약 시	A국 □□기업	~에 관한 연구	'22.4.1~'24.3.31.	총 5만불	해당과제 선행연구
	B국 ○○대학	연구인력 지원	'24.3.1~'25.2.28	박사급 2명 석사급 4명	해당과제 참여예정
수행 중	C국 △△연구소	~주제로 강연	'24.5.1	1000만원	해당과제 무관

5

보고 항목

지원 · 지급 출처, 사유, 기간, 금액,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



III. 보고내용: 적용 시기 - **법령 개정안 시행일(2024.2.6.)부터**



III. 보고내용: 주체 별 역할

과기정통부

- ☑ 제도 문의 게시판 운영
- ☑ IRIS 내 시스템 설계·운영
- ☑ 해당 연구책임자 대상 연구보안 안내메일 발송

부처· 전문기관

- ☑ 보고대상 관련 안내
- ☑ 공고문·협약서에 국외 수혜정보 작성 관련 문구 추가

공고문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서

연구책임자는 국가 R&D 수행 중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연구기관

- ☑ 보고대상 관련 안내
- ☑ 보안사고 등으로 소관 R&D 부처 요청 시 검증 자료 제공

연구책임자 등

- ☑ 국가 R&D 과제 협약·수행 시 해당 사항 보고 *

* 해당 (연구)책임자 개인이 보고

※ 1회만 입력하면 추후 다른 과제 신청·수행 시 자동 입력 후 수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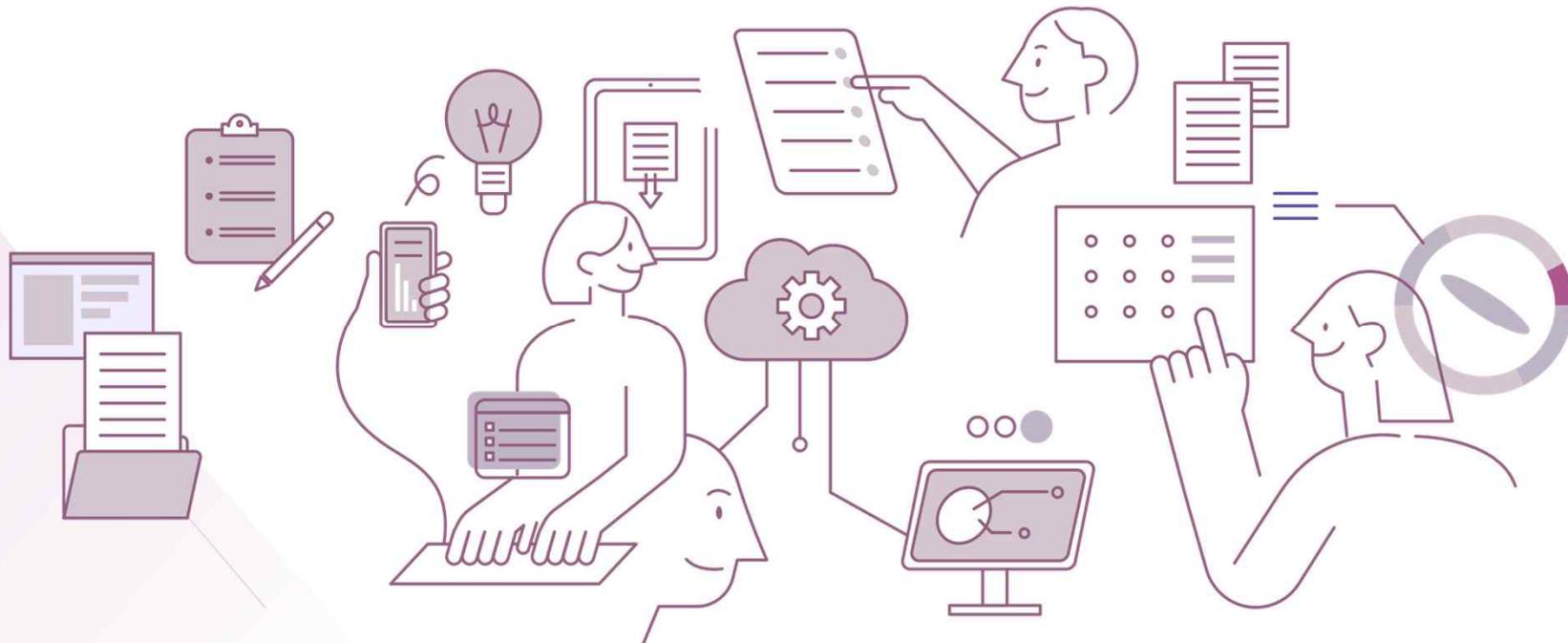
IV. 질의응답

Q1.

국외수혜현황 보고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은?

☑ 국가 R&D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국외의 지원 또는 지원예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상충 방지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은 국가R&D 신청 시 외부수혜보고 의무화, 미보고·허위보고 시 선정 취소·연구비 감액·연구비 중단 등 제재 조치



IV. 질의응답

Q2.

해외 주요국의 외부수혜현황 보고 제도와의 차이점은?

해외 주요국

국가 R&D 신청·수행 시

국내외 기관 수혜현황보고 의무화

보고 시기

보고 사항

우리나라

국가 R&D 협약·수행 시

국외 기관 수혜현황보고 의무화,
보고항목 최소화

국가	지원현황*	수혜내용 (과제명)	역할 (책임//참여)	지원출처 (기관명)	주요수행처	지원기간	지원금액 (수혜)M/M	국가과제 관련성	책임자 정보
		○		○		○	○	○	
	○	○		○	○	○	○	○	
	○	○	○	○		○	○	○	○

* 신청중/수혜중/수혜예정 등

IV. 질의응답

Q3.

참여연구원의 국외 지원사항도 보고 대상인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국외 지원사항만 해당

Q4.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보고 시기는?

- ☑ 책임자 변경에 따른 협약 변경 시, 변경된 책임자의 국외 수혜정보 보고

IV. 질의응답

Q5.

해외 본사 및 별도 법인(국내지사 등)이 있는 기관의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의 경우 보고 대상인지?

- ☑ 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경우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보고
- ☑ 해외정부(공공기관 포함) 또는 해외 본사 기업·비영리단체의 국내법인/지사/연락사무소(출장소) 등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 및 강의, 자문 등 대가는 보고 대상

Q6.

보고 대상이 되는 시기는?

- ☑ 선정·지정·협약·계약 체결 등 지원 확정 또는 신청한 경우 보고 대상이며, 단순 문의·제안·논의 사실만으로는 보고 사항이 아님
※ 보고사항(지원기간, 지원금액 등)은 수시 수정 가능
- ☑ 협약 당시 수혜 중인 지원사항은 보고 대상이나, 종료된 지원사항은 보고 대상이 아님
※ 협약 대상 국가R&D 과제수행과 기간이 중첩(또는 포함)되는 수혜 사항만 보고

IV. 질의응답

Q7.

학회발표, 자문 등의 대가 수수료 보고 사항인지?

- ☑ 대가가 있는 경우 보고 사항(교통·음식·숙박/체재비 명목의 실비 지원도 포함)이나, 동일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혜 대가의 연간 누계가 5,000달러(USD) 초과하는 경우로 한함

Q8.

대가 없이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도 보고 사항인지?

- ☑ 대가 * 가 없는 자문 등은 보고 사항 제외

* 금전, 유가증권 등 노무에 대한 보수 제공

IV. 질의응답

Q9.

해외 실험장비를 유상 구입 또는 무상 사용하는 경우도 '비금전적 지원' 보고사항인지?

- ☑️ 외국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증여·대여받는 경우 보고 사항임
- ☑️ 해외 연구기관 또는 판매업체로부터 정당한 대가 지불 후 장비 구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보고 사항이 아님
- ☑️ 외국의 시설·장비(표본·소모품 포함)에 대한 단순 공동활용은 보고 사항이 아님

Q10.

해외 정부·기관·단체 등에서의 겸직도 보고 사항인지?

- ☑️ 대가가 있는 겸직은 보고 사항이며, 대가가 없는 명예직은 보고 사항이 아님

IV. 질의응답

Q11.

국외기관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외수혜정보 보고가 가능한지?

- ☑ 비밀유지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보고가 곤란한 경우 지원기관·금액 기재 없이 보고 가능한 내용만 작성

※ “지원·지급 출처”에 해당국가명, “지원·지급 내용”에 “비밀유지계약 있음”으로만 기재

Q12.

단순 실수로 누락 또는 오보고한 경우 불이익은?

- ☑ 연구현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예정

V. 사례적용

'24.3.10. 국가R&D과제(일반과제)를 협약한 연구책임자 A의 국외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수혜정보와 보고시기는?

		보고대상 여부	보고시기
1	B국 연구소로부터 '21.3.10.~'23.3.9.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2	B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2.1. 자문 수행* * 자문수행일은 자문회의 개최/자문서 제출일 기준		
3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10.5. 신청하였으며 '24.3.11. 미선정 통보 받음		
4	C국 연구소로부터 '22.4.1~'24.3.31.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5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4.5. 지원 * 선정여부 미정		
6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6.1.~'25.5.30.까지 무상지원 받기로 '24.5.1. 계약 체결		

V. 사례적용

'24.3.10. 국가R&D과제(일반과제)를 협약한 연구책임자 A의 국외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수혜정보와 보고시기는?

		보고대상 여부	보고시기
1	B국 연구소로부터 '21.3.10.~'23.3.9.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
2	B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2.1. 자문 수행* * 자문수행일은 자문회의 개최/자문서 제출일 기준		
3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10.5. 신청하였으며 '24.3.11. 미선정 통보 받음		
4	C국 연구소로부터 '22.4.1~'24.3.31.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5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4.5. 지원 * 선정여부 미정		
6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6.1.~'25.5.30.까지 무상지원 받기로 '24.5.1. 계약 체결		

V. 사례적용

'24.3.10. 국가R&D과제(일반과제)를 협약한 연구책임자 A의 국외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수혜정보와 보고시기는?

		보고대상 여부	보고시기
1	B국 연구소로부터 '21.3.10.~'23.3.9.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
2	B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2.1. 자문 수행* * 자문수행일은 자문회의 개최/자문서 제출일 기준	-	-
3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10.5. 신청하였으며 '24.3.11. 미선정 통보 받음		
4	C국 연구소로부터 '22.4.1~'24.3.31.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5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4.5. 지원 * 선정여부 미정		
6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6.1.~'25.5.30.까지 무상지원 받기로 '24.5.1. 계약 체결		

V. 사례적용

'24.3.10. 국가R&D과제(일반과제)를 협약한 연구책임자 A의 국외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수혜정보와 보고시기는?

		보고대상 여부	보고시기
1	B국 연구소로부터 '21.3.10.~'23.3.9.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
2	B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2.1. 자문 수행* * 자문수행일은 자문회의 개최/자문서 제출일 기준	-	-
3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10.5. 신청하였으며 '24.3.11. 미선정 통보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 미선정 통보 후 수정(삭제) 가능
4	C국 연구소로부터 '22.4.1~'24.3.31.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5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4.5. 지원 * 선정여부 미정		
6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6.1.~'25.5.30.까지 무상지원 받기로 '24.5.1. 계약 체결		

V. 사례적용

'24.3.10. 국가R&D과제(일반과제)를 협약한 연구책임자 A의 국외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수혜정보와 보고시기는?

	보고대상 여부	보고시기
1 B국 연구소로부터 '21.3.10.~'23.3.9.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
2 B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2.1. 자문 수행* * 자문수행일은 자문회의 개최/자문서 제출일 기준	-	-
3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10.5. 신청하였으며 '24.3.11. 미선정 통보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 미선정 통보 후 수정(삭제) 가능
4 C국 연구소로부터 '22.4.1~'24.3.31.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5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4.5. 지원 * 선정여부 미정		
6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6.1.~'25.5.30.까지 무상지원 받기로 '24.5.1. 계약 체결		

V. 사례적용

'24.3.10. 국가R&D과제(일반과제)를 협약한 연구책임자 A의 국외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수혜정보와 보고시기는?

	보고대상 여부	보고시기
1 B국 연구소로부터 '21.3.10.~'23.3.9.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
2 B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2.1. 자문 수행* * 자문수행일은 자문회의 개최/자문서 제출일 기준	-	-
3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10.5. 신청하였으며 '24.3.11. 미선정 통보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 미선정 통보 후 수정(삭제) 가능
4 C국 연구소로부터 '22.4.1~'24.3.31.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5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4.5. 지원 * 선정여부 미정	✓	해외과제 신청 시('24.4.5.)
6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6.1.~'25.5.30.까지 무상지원 받기로 '24.5.1. 계약 체결		

V. 사례적용

'24.3.10. 국가R&D과제(일반과제)를 협약한 연구책임자 A의 국외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수혜정보와 보고시기는?

	보고대상 여부	보고시기
1 B국 연구소로부터 '21.3.10.~'23.3.9.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
2 B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2.1. 자문 수행* * 자문수행일은 자문회의 개최/자문서 제출일 기준	-	-
3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10.5. 신청하였으며 '24.3.11. 미선정 통보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 미선정 통보 후 수정(삭제) 가능
4 C국 연구소로부터 '22.4.1~'24.3.31.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5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4.5. 지원 * 선정여부 미정	✓	해외과제 신청 시('24.4.5.)
6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6.1.~'25.5.30.까지 무상지원 받기로 '24.5.1. 계약 체결	✓	해외와 계약 체결 시('24.5.1.)

V. 사례적용

'24.3.10. 국가R&D과제(일반과제)를 협약한 연구책임자 A의 국외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수혜정보와 보고시기는?

		보고대상 여부	보고시기
1	B국 연구소로부터 '21.3.10.~'23.3.9.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
2	B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2.1. 자문 수행* * 자문수행일은 자문회의 개최/자문서 제출일 기준	-	-
3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10.5. 신청하였으며 '24.3.11. 미선정 통보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 미선정 통보 후 수정(삭제) 가능
4	C국 연구소로부터 '22.4.1~'24.3.31.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5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4.5. 지원 * 선정여부 미정	✓	해외과제 신청 시('24.4.5.)
6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6.1.~'25.5.30.까지 무상지원 받기로 '24.5.1. 계약 체결	✓	해외와 계약 체결 시('24.5.1.)

국가R&D과제 협약일('24.3.10.) 기준

계속 또는 예정된 국외지원정보 → 협약 시 보고사항 ○

종료된 국외지원정보 → 협약 시 보고사항 X

V. 사례적용

'24.3.10. 국가R&D과제(일반과제)를 협약한 연구책임자 A의 국외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아래와 같을 때 보고하여야 하는 국외수혜정보와 보고시기는?

		보고대상 여부	보고시기
1	B국 연구소로부터 '21.3.10.~'23.3.9.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
2	B국 연구소에 자문료를 받고 '24.2.1. 자문 수행* * 자문수행일은 자문회의 개최/자문서 제출일 기준	-	-
3	C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과제를 '23.10.5. 신청하였으며 '24.3.11. 미선정 통보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 미선정 통보 후 수정(삭제) 가능
4	C국 연구소로부터 '22.4.1~'24.3.31.까지 연구과제를 지원 받음	✓	국가R&D협약 시('24.3.10.)
5	D국 대학과의 공동연구 공모과제*에 '24.4.5. 지원 * 선정여부 미정	✓	해외과제 신청 시('24.4.5.)
6	D국 기업의 연구시설을 '24.6.1.~'25.5.30.까지 무상지원 받기로 '24.5.1. 계약 체결	✓	해외와 계약 체결 시('24.5.1.)

국가R&D과제 협약일('24.3.10.) 기준

계속 또는 예정된 국외지원정보 → 협약 시 보고사항 ○
종료된 국외지원정보 → 협약 시 보고사항 X

국가R&D과제 수행 중
발생 또는 예정된 국외지원정보는 보고사항임

VI. 문의처

●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 문의가 우선

- 연구기관 → (대응이 어려운 경우) → 전문기관 → (추가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 KISTEP

● IRIS 제도문의 게시판(www.iris.go.kr)

1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2 알림·고객
3 R&D제도문의
4 자주묻는 질문
5 [대분류] 연구보안

R&D제도문의 FAQ

대분류 연구보안
등록일자 yyyy/mm/dd ~ yyyy/mm/dd
제목 제목을 입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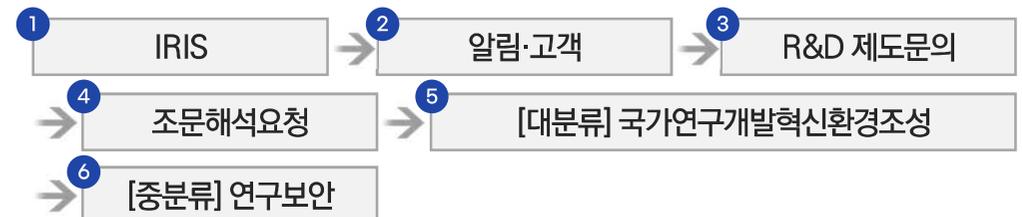
1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2 알림·고객
3 R&D제도문의
4 주문해석요청
5 기관부처
6 전문기관

주문해석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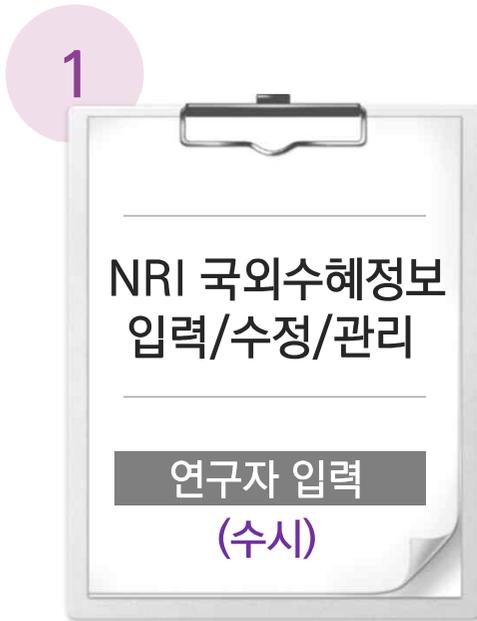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주문해석을 요청하는 게시판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 및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주문해석에 대한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문해석요청 전 FAQ 또는 기존 질의응답을 먼저 확인 후 질의 부탁드립니다.
-답변 등록 이후에는 질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질의내용이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기관부처
제도분야(대분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연) 제도분야(중분류) 연구보안 제도분야(소분류)
등록일자 yyyy/mm/dd ~ yyyy/mm/dd
제목 내용을 입력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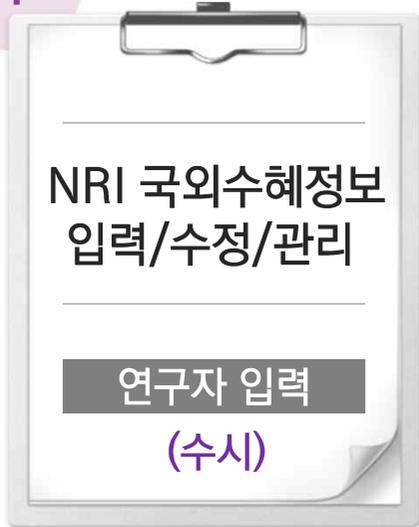
붙임 - 보고절차 매뉴얼(IRIS)



※ NRI에 입력한 국외수혜정보는 IRIS 과제접수 및 과제수행 전 단계에서 조회 및 활용 가능
(연구자가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음)

붙임 - 보고절차 매뉴얼(IRIS)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 IRIS NRI 국외수혜정보 입력/수정/관리

○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국외수혜정보 입력
 - 연구보안 → 연구업적관리 → 국외수혜정보에서 직접 등록/수정 가능



[그림]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외수혜정보입력 메뉴 위치(안)

※ 연구자가 ㉔ 과제 '접수' ㉕ 과제 협약용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㉖ 과제 '협약변경 신청' 시 국외수혜정보 신고 유도 알림 메시지 표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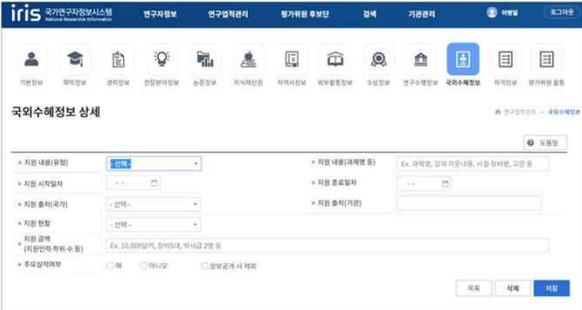
신청공고목록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께서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금액적·비금전적(연구장비·시설·인력 등)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NRI에서 국외수혜정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외수혜정보입력 유도 메시지 표출(예시)

- 국외수혜정보에서 다음의 작성 항목을 입력 후 저장해야 등록 완료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외수혜정보입력 입력화면(안)

〈표〉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외수혜정보입력 입력항목(안)

항목	설명
지원 내용(유형)	연구과제 / 강의 자료 / 연구시설 장비 / 연구인력 / 직위 중 택일
지원 내용(과제명 등)	과제명, 강의 자료 내용, 시설·장비명 등 직접 입력
지원 시작일자/종료일자	달력에서 선택
지원 출처(국가)	목록에서 선택
지원 출처(기관)	직접 입력
지원 현황	수혜 / 보류 / 신청 / 선정 중 택일
지원 금액(지원인력·학위·수 등)	직접 입력
주요 실적 여부	예 / 아니오 중 택일 ※ "정보공개 시 제외" 여부 선택 가능

※ NRI에 입력한 국외수혜정보는 IRIS 과제접수 및 과제수행 전 단계에서 조회 및 활용 가능 (연구자가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음)

※ 본 슬라이드는 예시로 실제 IRIS 매뉴얼은 추후 안내 예정

붙임 - 보고절차 매뉴얼(IRIS)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걸음마 뛰어나서

참고 IRIS 국가R&D 과제 협약 시 국외수혜정보 신고

- 연구자가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국외수혜정보 신고** 필요

(협약용)연구개발계획서제출

연구부서: 연세, 연구기관: 연세연구재단, 사업명: 2023년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계획서상태: 미작성, 제출기간: ...

| 과제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
|-------------------------|-------------|-------------|-------------|-------------|-------------|-------------|-------------|-------------|-------------|
| [예시]연구과제-85-2023-002843 | [예시]연구개발과제명 |

붙임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께서는
 국외의 정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연구나 발명·특허권 등 관련 지식재산권(연구
 정보·기술·인력 등)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NRI에서 국외수혜정보를 신고하여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입력(필수)

[그림] IRIS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외수혜정보입력 유도 메시지 표출(예시)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기관 → 연구개발기관정보 → 연구책임자 성명
 옆에 생성되는 아이콘을 눌러 국외수혜정보 입력내용 확인
- 신청 대상 과제와 해당 국외수혜정보 **관련성**을 입력해야 저장 가능

연구개발기관 정보

기관명	목적	연구개발기관명	사업담당자명	책임연구자명	기관명	소재지	연구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한민국	홍익대학교	315-83-0067	박영희	태원(사단법인)	충청북도 청주시	일일치킨

기관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담당자	담당자명	신용평가	기관	출발	수정
주관연구개발기관	홍익대학교	홍익대	홍익대	홍익대	1	3	4	5

국외수혜정보 신고

지원현황	지원출처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해당과제와의 관련성
수혜	C국 ○○연구소	○○주요역량	*24.5.1.	1,000만원	해당과제와의 관련성

NRI에 연구자가 입력한 정보를 표출

직접입력(필수)

[저장] [닫기]

[그림]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신고화면(예시)

※ NRI에 **이미** 입력한 국외수혜정보에 **신청과제와의 관련성만** 추가 입력

※ 수행 중 협약 변경 시에도 동일

※ 본 슬라이드는 예시로 실제 IRIS 매뉴얼은 추후 안내 예정

- 1 -

감사합니다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 교육(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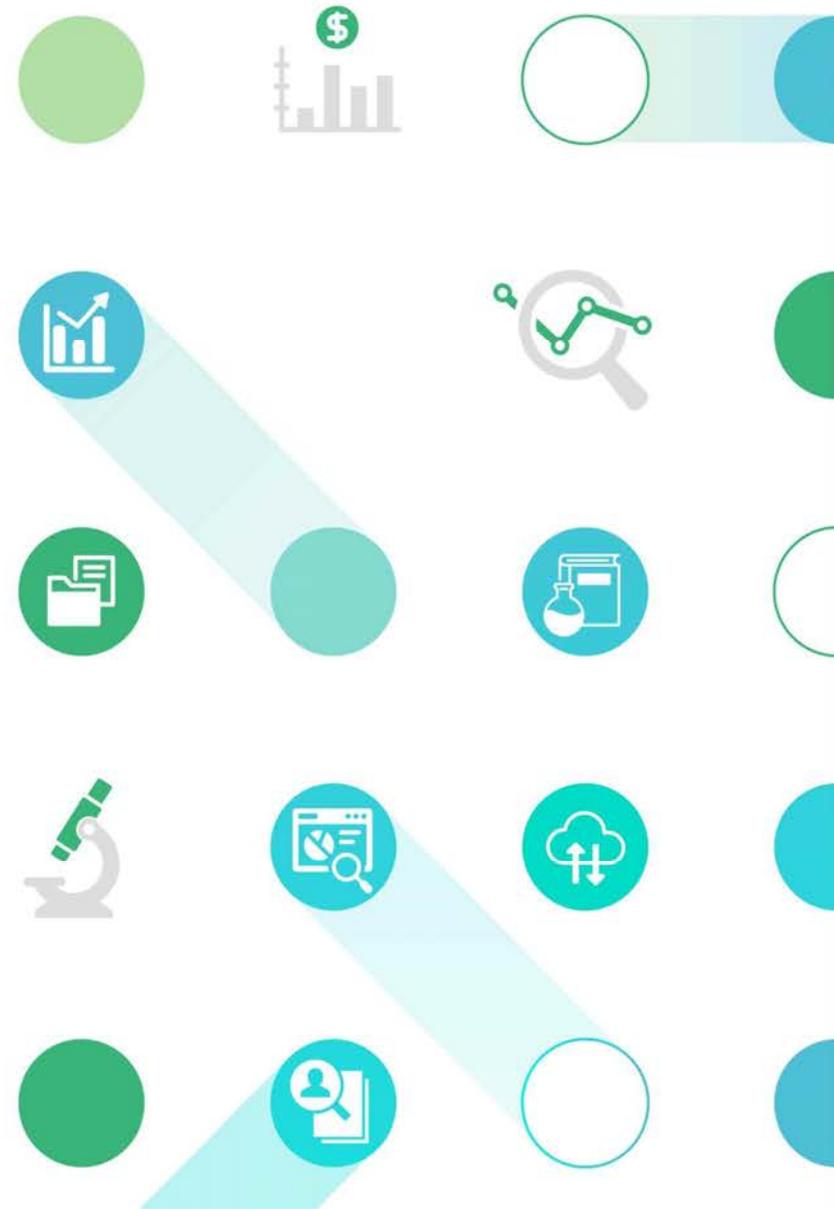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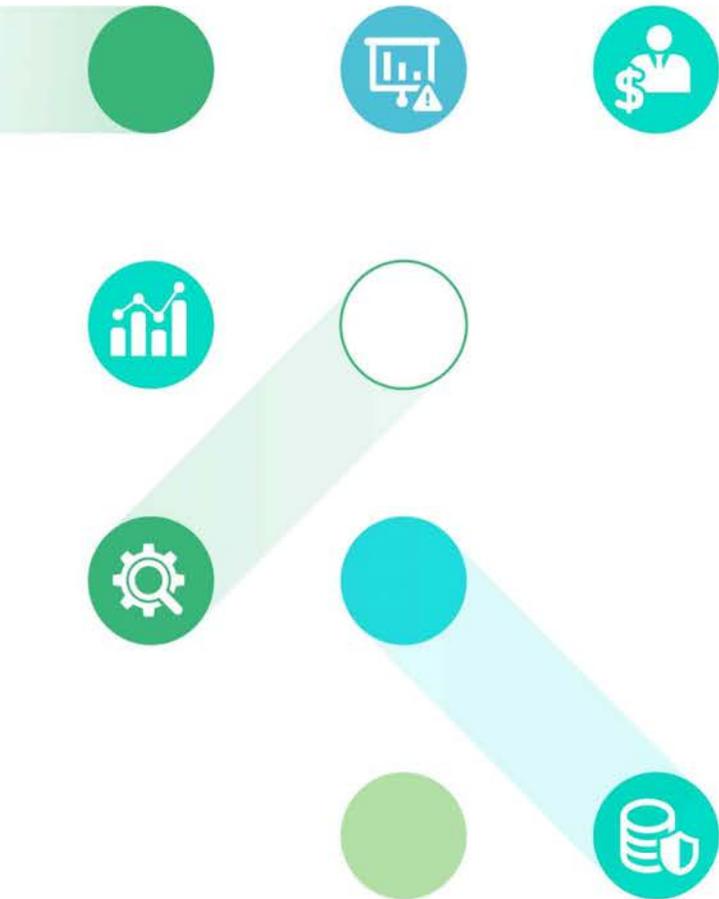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회





목차

- I |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 II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인정 기준
- III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사용 절차
- IV | 연구개발비 집행 유의 사항
- V |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 VI | **2024년 달라지는 점**
- VII | 기타 안내사항



I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승인 대상)



연구개발부담비 (정부출연기관만 해당)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연구개발비 계상 및 인정기준



I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직접비는 해당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출 가능한 비용



간접비는 여러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출 불가능한 비용



환급 가능한 세금*,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 계상, 기관 내부 거래**, 동일 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비용, 계열사간 거래 비용은 **계상 불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위탁연구개발과제에서의 매입 부가가치세 등

**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계상 불가** (단, 대학이 기관내 별도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비영리기관이 기관내 공동 연구시설·장비, 시험·분석, 중앙물품창고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출연연 본원 - 분원 간 거래 비용은 **계상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등의 수입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연구개발비 계상 및 인정기준



2 | 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 원칙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지출 원인행위한 금액(지출 원인이 되는 물품·용역 및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사업수행 결과에 반영)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현금 사용 가능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 포함)는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 소액(ex: 100만원)의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는 구매·검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자체규정도 인정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1 직접비 사용기준

인건비 (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48조, 제57조)

✓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본원칙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예외사항 대학의 전임교원, 공무원은 현금 계상 불가



현금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현금계상 불가능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1 직접비 사용기준

인건비(영리기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본원칙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능함
※ 연구근접직원인력 인건비는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하며, 영리기관은 계상불가

예외사항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전문연구사업자 소속 참여연구자,
그 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현금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1 직접비 사용기준

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48조, 제57조, 제65조)

✓ 총인건비계상률 = ① 인건비계상률 + ② 학생인건비계상률 + ③ 학생인건비지급률
 +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

-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제24조, 제38조)

-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축계획을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 ✓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임차 완료
 -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목표인 과제는 과제 종료일까지, 재난, 재해, 중대한 사유발생시 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구입, 설치, 임차 가능
-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과제 시작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과제 시작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는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
 - 구입일이 과제 시작일 5년 이내,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계상 연도 말일 이후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여러 과제에서 현물 계상액의 합이 구입가 초과 불가



연구재료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4조)

- ✓ 자체규정에 따라 검수완료한 연구재료는 과제 종료일까지 구매 가능
-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시험제품·시험설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연구활동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68조, 별지 제4호 서식)

-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는 불가 (간접비로만 사용 가능)
-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 원칙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 시 40% 초과 계상 가능)
- ✓ **회의비** |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석하는 회의는 식비(다과비 포함) 계상 불가
 -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가 완료된 경우에만 식비 계상 가능 ('24.12.1. 시행 예정)
- ✓ **출장비** |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이 아닌 자는 기관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으로 계상 가능
- ✓ **SW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시 계상 가능
 - SW 사용계약기간(최소단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상 가능
- ✓ **연구실운영비** |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협약 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영리기관에서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
- ✓ **연구인력지원비**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평일 점심 식대 등 계상 불가
-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과제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아닌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절차 진행) 에 한하여 체재비 등 비용 계상 가능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연구수당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 ✓ **수정인건비**(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계상·사용하되, 연구개발과제(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단,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증액 가능
- ✓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되, **한 명의 연구자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참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 제외)
- ✓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포인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 시 회수**

*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 (현물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

$$\text{연구수당 지급액} \times \left(\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text{직접비사용비율} - \frac{20}{100} \right)$$



보안수당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의2)

-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하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

- ✓ 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범위 내 계상이 원칙
-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 시 사전 승인 필요
-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산 실시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2 간접비 사용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0조~제33조, 제37조, 제46조, 제55조, 제63조)

✓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시작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

구분	정부출연기관	대학	영리기관
사용기준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 가능	별도계정으로 통합관리 가능 <small>*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다른 자원 간접비 구분 관리</small>	과제별 관리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자,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자체성과평가 실시 후 지급



연구지원비

- 대학의 경우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원 이상 공동연구장비에 한해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계상 가능
- 학술용도서·전자정보구입비 등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관련된 비용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단,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시 실사용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3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제72조)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일괄
지급

연구비카드 사용
그 밖의 경우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적용
예외사항



-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한 비용: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건별
지급

연구비카드 사용
그 밖의 경우

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 협약체결·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자체재원 활용 인정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4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 ✓ 전체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
- ✓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현물부담금액의 변경 포함)
- ✓ 전체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 ✓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변경

-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신규인력 1인에 대한 계상액이 아닌 해당 과제에 계상된 금액 전체를 의미)

✓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 계획에 없는 3천만 원 | (부가가치세, 구입·설치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신규 구입
- 계획에 있는 3천만 원 | (부가가치세, 구입·설치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 구입
※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의 20% 이내 증감되는 경우 제외
(부가가치세, 구입·설치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미구입
※ ZEUS를 통해 무상 이전받은 경우 제외
-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를 계획과 다른 장소에 설치·운영



II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사용절차

4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변경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 해당 단계 직접비(현물제외)를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로 이월

✓ 전체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 증액

- 연구개발비 총액(단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 금액 변경

✓ 전체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 증액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경우 제외)



IV

연구개발비 집행 유의 사항

1 환급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계상

✓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비카드 사용액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건 처리 시 환급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비 사용액은 공급가액(총 결제대금에서 부가가치세 금액 차감)에 대해서만 계상하여야 함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과제의 구분 기준

-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그 밖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등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 해당 여부는 조세당국의 검토 필요함

IV

연구개발비 집행 유의 사항

2 연구수당 초과 집행

✓ 수정인건비의 20% 초과집행 | 실집행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수정인건비의 20% 기준이 아닌 정산 완료된 수정인건비의 20% 기준 이내로 연구수당을 사용하여야 함



✓ 1인 연구수당 단독 수령 | 1인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단독 지급하는 경우

- 혁신법은 단계별 정산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기간 동안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경우 1인에게 연구수당 단독 지급이 불가하며, 1인 최대 지급률(70%)를 준수하여야 함

IV

연구개발비 집행 유의 사항

3 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용 집행

- ✓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 연구과제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 후, 마치 연구과제를 위하여 구입한 물품인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의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 ✓ **사적 용도의 연구비 사용** | 개인적 목적으로 물품 구입, 회의식대, 출장비 등을 사용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증명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 특히, 사회통념상 연구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의심될 만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연구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구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전에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문의한 후 사용 권고
- ✓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역비** |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 목적에 부합 하지 아니하고, 최종 연구보고서에도 활용되지 않은 용역비
 - 용역결과가 연구보고서 등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사용에 유의



IV

연구개발비 집행 유의 사항

4 외부기관 미참여 회의비 집행

- ✓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간의 회의식비 사용**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식비를 사용한 경우
 - 외부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이나 회의식비는 동일 기관 소속자간 사용하는 경우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 허위의 외부기관 참석자 기재 불가
- ✓ **동일 과제 참여연구자 간의 회의식비 사용** | 소속기관이 상이하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소속기관이 상이하더라도 동일 연구개발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간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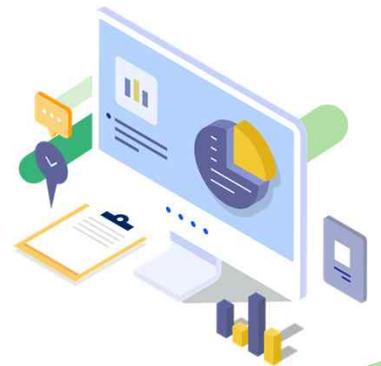
1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 ✔ 정산실시 전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점검
-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거나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2 과제(단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등에 부합하는 경우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

- ✔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영 제19조제1항)
-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영 제20조제1항)
- ✔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용기준 제5조~제72조)
- ✔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기준 제73조~제74조)
- ✔ 이자의 사용용도 (사용기준 제75조~제78조)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4 연구개발비 회수

✓ 연구개발비 회수 대상액

- 직접비 사용 잔액
- 간접비 사용 잔액 (협약해약 시 간접비 사용잔액, 공기업 이외 기업의 간접비 사용잔액)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액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총액 × (간접비집행비율 - 직접비집행비율)

✓ 최종 회수액 = 연구개발비 회수 대상액 × 정부지원금 비율 + 현물부담 부족금액*

*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 (현금 연구개발비 사용액 ÷ 현금 계상 연구개발비)] - 실제 현물 부담액

✓ 정산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 금액 반납



5 이의신청

✓ 정산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가능

VI

2024년 달라지는 점

1 연구개발기관의 파견비용 인정범위 확대



변경 전

출연연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 파견비용,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융합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파견비용에 한하여 계상 가능

변경 후

부처(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외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 관련 지원 비용 계상 가능

2 국제공동연구 수행 영리기관의 기관부담금 기준 개선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비에 대해서 기관부담금 매칭비율 적용
→ (총 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기관 유형별 부담 비율

3 종이 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증명자료의 보관 면제 명확화



- ✓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증명자료의 보관 의무를 면제하고, 연구비 정산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수행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도록 규정 강화

VI

2024년 달라지는 점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 사항 관련 서식 마련



-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비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함께 제출

5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요건 강화 (24.12.1. 시행 예정)



변경 전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가능
출연연 기본사업은 예외로 내부 인원만 참석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

변경 후 회의비 중 식비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
단, 사전에 결재가 완료된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한하여 계상 가능

6 학생인건비 최저 계상률 도입



- ✓ 학생연구자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령하는 학생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4항의 계상기준*의 1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의 지급액은 동 계상기준*의 20% 이상이 되어야 함

* 학사과정 : 130만 원, 석사과정 : 220만 원, 박사과정 : 300만 원 (/월)

7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급비율 지정취소 기준 완화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중 기관 학생인건비 총지급비율 기준 완화

지급비율 (기존) 60% 이상 → (개정) 50% 이상

※ '23년 지급분부터 적용 예정

참고사항 금년도 학생인건비 부족 시 보충을 위해 작년도 지급비율을 완화하였으며, '24년도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등을 적극 확인 예정

→ 잔액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인건비 부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드립니다

8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 분리



- ✓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비 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여야 함(연구개발비 계좌 내 학생인건비 계정 분리하는 것 불인정)
※ 연구개발기관의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24년 9월부터 시행 예정

9 학생인건비통합관리 휴면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허용



- ✓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기관장 책임 하에 협의를 거쳐 타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관 가능

10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책임자계정 이체 기한 완화



- ✓ 전체 금액 이체 기한을 과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에서 '종료일'로 완화
※ 연구개발비 입금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체 규정은 유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 혁신법령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주요 질의응답사항 안내
 - 23년도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매뉴얼 배포 예정('24.3월말)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KISTEP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창구 운영

-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연구비 사용 문의 게시판 운영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로그인 / 알림·고객 / R&D사업과제·관리문의
 - 해당 과제의 소관 전문기관 담당자가 답변 제공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관련 조문해석 질의응답 게시판 운영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로그인 / 알림·고객 / R&D제도문의 / 조문해석요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문해석 답변 제공

참고사항

과제수행 관련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 비목·항목·세목 선택, 증명자료 구비, 혁신법령 외 부처 R&D규정 및 세법 등 타법령의 적용 문의 등은 소관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R&D사업과제·관리문의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